성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5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 정 이 유

생계형 사건.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 됨에 따라 전달체계의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국무회의 보고 를 통해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증원키로 결정,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이 증원 승인됨으로 군본청에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사회복지 종합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 개정내용

° 정원의 조정 : **553명 ⇒ 560명** (증7명 - 사회복지과)
- 집행기관 : 542명 ⇒ 549명 (증7명)

3. 일부 개정조례(안) : 붙임과 같음

4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5. 참고사항

° 기구.정원 조정 계획
° 증원 승인관련 공문
° 비용추계서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"553"을 "560"으로 하고, 동조 제1호 중 "542"를 "549"로 한다.

"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"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이유
제2조(정원의 총수) 성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53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. 1.집행기관 : 542명 2.(생략)	제2조(정원의 총수).....560.... 1. : 549.. 2..(현행과 같음)	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 증원승인에 따른 인력증원